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비 상 대 비 자 원 관 리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안

2022. 2.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이유

비상대비를 위한 자원 관리뿐 아니라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교육·훈련의 실시 등 비상대비업무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존 「비상대바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82호, 2022. 1. 4., 일부개정, 2022. 7. 5. 시행)」로 제명을 변경하는 한편, 상위법 용어정리에 따라 하위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1)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제명을 변경

나. 집행기관 명칭 변경(전문 일괄변경)

- 1) 비상대비 집행기관은 ‘비상대비책임기관’으로 주무부장관은 ‘자원 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시행령에 일괄 반영

다. 인력자원 정의 정비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 1) 해당조항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연계 조항에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시행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학기술자 (채용·고용·해임·해고) 통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자 (채용·고용·해임·해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공 학과명	학위명	취득 연도	비고
						채용·고용 [] 해임·해고 []
						채용·고용 [] 해임·해고 []
						채용·고용 [] 해임·해고 []
						채용·고용 [] 해임·해고 []
						채용·고용 [] 해임·해고 []
						채용·고용 [] 해임·해고 []
						채용·고용 [] 해임·해고 []
						채용·고용 [] 해임·해고 []
						채용·고용 [] 해임·해고 []

끝.

시행기관의장직인

(시행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기술에 관한 자격과 면허 (부여·취소)사항 통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술에 관한 자격과 면허 (부여·취소)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자격·면허 종목 및 등급	발급번호	부여·취소 날짜	근거

끝.

시행기관의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수 신

제 목 비축물자 실태보고

1. 비축물자 총보유 현황

단위: 천원

종류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전년도 말 보유		연도계획		연도실적		총보유		다음연도계획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2. 비축물자 보관장소별 현황

종류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시·도별								
					소계 (시·도별)	보관 장소명	보관 장소명	보관 장소명	보관 장소명	보관 장소명	보관 장소명	보관 장소명	보관 장소명

3. 비축물자 보관·저장시설 현황

시설명	시설규모				예산규모		소재지
	대지(㎡)	건평(㎡)	구조물	부대시설	시공기간	시설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축물자의 실태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명 (직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서

대상 인력 또는 물자의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참여 및 사용 대상		참여 및 사용 기관
통합방위사태 선포내용	대상지역	일시
	선포이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인력의 참여 또는 물자의 사용을 위한 협력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직인

유의사항

- 이 협력요청서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당시에 미리 그 참여 또는 사용 협력에 동의를 받은 인력 또는 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통합방위법」 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참여한 인력을 되돌려 보내거나 사용한 물자를 반환합니다. 다만,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주일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절 취 선 >

제 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확인증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력의 참여 또는 물자의 사용에 대해 협력함을 확인합니다.

대상 인력 또는 물자의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참여 및 사용 대상		참여 및 사용 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위한 사전 동의서

대상 인력 또는 물자의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참여 및 사용 대상		참여 및 사용 기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방위법」 제12조에 따른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되는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인력으로 참여하거나 소유 물자를 사용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기 관 장 명

직인

유의사항

- 이 사전 동의서와 별도로 「통합방위법」 제12조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는 경우 대상 인력 또는 물자의 소유자에게 참여 또는 사용 협력을 요청하게 됩니다.

< 절 취 선 >

제 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위한 사전 동의 확인증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방위법」 제12조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는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 보호를 위하여 인력으로 참여하거나 소유 물자를 사용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대상 인력 또는 물자의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참여 및 사용 대상		참여 및 사용 기관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중지 통지서

대상 인력 또는 물자의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참여 및 사용 대상		참여 및 사용 기간
해제 일자		해제 사유

「통합방위법」 제12조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됨에 따라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인력의 참여 또는 물자의 사용이 중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직인

(요 청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인력훈련 요청**

「비상대비예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력훈련을 요청합니다.

사용기관	명칭	요청인원	명 (자격·면허별 인원은 별도 작성)
	소재지		
훈련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훈련목적			
집결일시	년 월 일	집결장소	

끝.

요 청 기 관 의 **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요 청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물적자원훈련(동시관리훈련) 요청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물적자원훈련(동시관리훈련)을 요청합니다.

1. 훈련대상물자

물자 품명	규격 또는 구조	단위	수량	훈련 기간	물자의 제출 또는 인도			비고
					일시	장소	사용기관 (인수기관)	

2. 훈련대상업체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용기관
훈련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훈련내용			

3. 요청 사유

4. 자격·면허별 훈련대상 인원(동시관리훈련만 해당함)

끝.

요 청 기 관 의 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인력훈련 면제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훈련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근무처)	훈련통지서 번호		
	출석일시	출석장소		
면제 사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인과의 관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인력훈련을 면제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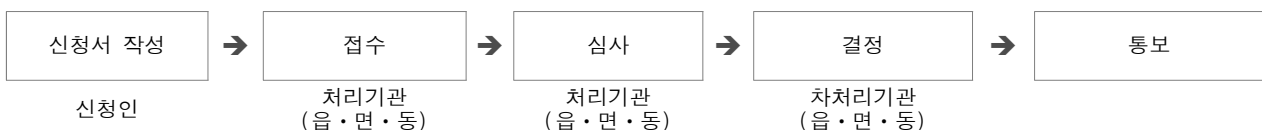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첨부서류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의 진단서 1통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인력훈련 면제(면제해제)대상자 통보

인력훈련대상자 중 면제(면제해제)대상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세대주	면제사유	해제사유	자격면허	비고
							면제 [] 면제해제 []
							면제 [] 면제해제 []
							면제 [] 면제해제 []
							면제 [] 면제해제 []
							면제 [] 면제해제 []
							면제 [] 면제해제 []
							면제 [] 면제해제 []
							면제 [] 면제해제 []
							면제 [] 면제해제 []
							면제 [] 면제해제 []

끝.

기 관 의 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앞쪽)

인력훈련통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훈련기간	년 월 일부터	직종별	자격·면허번호		
	(일간)				
	년 월 일까지		자격·면허명		
사용기관			사용기관 소재지		
출석장소			출석일시	년 월 일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력훈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중앙행정기관의 장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지방행정기관의 장

직인

< 절 취 선 >

제 호

인력훈련통지서 수령증

인력훈련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훈련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수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본인과의 관계	
수령일시			수령장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인력훈련통지서

(안내 사항)

1. 훈련대상자는 이 통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일시와 장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2. 훈련대상자의 부재 시 통지서를 받은 가족 또는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게 해야 합니다.
3. 이 통지서를 받고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때에는 인력훈련통지서, 주민등록증, 국가기술자격면허수첩 및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4. 이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1. 이 수령증은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2. 통지서 교부권자는 이 통지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호

(앞쪽)

물적자원훈련통지서(물자 제출용)

업체명							
주소							
물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업체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물자의 품명	규격 또는 구조	단위	수량	물자의 제출 또는 인도			훈련기간
				일시	장소	인수자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적자원훈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중앙행정기관의 장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지방행정기관의 장

직인

< 절 취 선 >

제 호

물적훈련통지서(물자제출용) 수령증

수령자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주소		소유자(점유자) 또는 업체의 장과의 관계	
	수령일시		수령장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물적자원훈련통지서(물자 제출용)

(안내사항)

1. 이 통지서를 받은 물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통지서에 적힌 물자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제출하거나 인도해야 합니다.
2. 장비를 제출할 때에는 그에 딸린 예비품 및 공구를 반드시 장비와 같이 인계해야 합니다.
3. 동시관리훈련인 경우 이 통지서와 함께 인력훈련통지서를 받은 물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인력훈련통지서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장비 및 업체와 동시관리훈련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4. 이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물자를 제출 또는 인도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1. 이 수령증은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2. 통지서 교부권자는 이 통지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호

(앞쪽)

물적자원훈련통지서(업체사용 및 시험제품생산 훈련용)

업체명		대표자 성명	
업체 주소		대표자 생년월일	
훈련내용	[] 업체사용 [] 시험제품생산		사용기관 (인수기관)
훈련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시험제품의 품명 및 수량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적자원훈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중앙행정기관의 장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지방행정기관의 장

직인

< 절 취 선 >

제 호

물적훈련통지서(업체사용 및 시험제품생산 훈련용) 수령증

수령자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주소			
	업체의 장과의 관계			
	수령일시		수령장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물적자원훈련통지서(업체사용 및 시험제품생산 훈련용)

1. 이 통지서를 받은 업체의 장은 필요한 물자·장비·시설 등을 점검하여 훈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2. 동시관리훈련인 경우 이 통지서와 함께 인력훈련통지서를 받은 업체의 장은 인력훈련통지서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 지정된 업체와 장소에서 동시관리훈련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3. 이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훈련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1. 이 수령증은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2. 통지서 교부권자는 이 통지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훈련통지서 교부 결과 보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훈련
통지서 교부 결과를 보고합니다.

구분	계획 인원	발급 인원	교부 인원	교부 현황				
				계	본인	가족	물자의 관리인,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	기타
부문별 훈련	인력							
	물자							
동시 관리 훈련	인력							
	물자 또는 업체							
교부가 불가능한 자의 통지서 번호 및 그 사유								

끝.

기 관 의 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출석불능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근무처)	훈련통지서 번호	
	출석일시	출석장소	
출석불능 사유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본인과의 관계	신고 연월일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력훈련에 참가할 수 없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력훈련통지서 교부권자 귀하

첨부서류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의 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1통 2.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훈련에 출석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또는 경위서 1통	수수료 없 음
------	--	------------

< 절 취 선 >

제 호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서 접수증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제출하신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 그 사유가 타당하여 접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려하오니 이번 훈련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력훈련통지서 교부권자)

(서명 또는 인)

※ 이 신고는 이번 훈련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업체명		
	물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업체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통지서 번호	물자 품명	
	물자 소재지	규격 또는 구조	
	단위	수량	
제출불능 사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훈련대상물자를 제출할 수 없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물적자원훈련통지서 교부권자 귀하

첨부서류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파산결정서 사본 1통 2.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물자를 제출할 수 없거나 문서를 지참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또는 경위서 1통	수수료 없 음
------	---	------------

.....< 절 취 선 >.....

제 호

물적자원 제출불능 신고서 접수증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제출하신 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 그 사유가 타당하여 접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려하오니 이번 훈련에 훈련대상물자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물적자원훈련통지서 교부권자)

(서명 또는 인)

※ 이 신고는 이번 훈련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훈련 참가자 인도 · 인수증

인도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인수자	소속
	직급(계급)
	군번
	성명
인도 · 인수 일시	
인도 · 인수 장소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훈련 참가자(명단 별첨)명을 인도 ·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제 호

훈련 제출물자 인도·인수증

인도관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인수관	소속								
	직위(직급·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물자 제출자	소유자(점유자) 또는 업체명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인도·인수 번호	물자의 소재지	품명 또는 지목	규격 또는 구조	단위	수량	과세 또는 시가 표준 금액	제조(건조) 연월일	물자의 현 상태	훈련종 류

「비상대비예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훈련 제출물자를 위와 같이 인도·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력훈련해제통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훈련종류		사용기관	
해제일		해제 사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 대한 훈련이 해제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중앙행정기관의 장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지방행정기관의 장

직인

물적자원훈련해제통지서

업 체 명			
물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업체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인수대상물자

물자의 품 명	물자의 소재지	규격 또는 구조	단 위	수 량	인도·인수 장소	훈련해제일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훈련이 해제되었음을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제출물자를 인도·인수 장소에서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중앙행정기관의 장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지방행정기관의 장

직인

인력훈련해제통지서 발급대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물적자원훈련해제통지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	발급일	훈련제출물자의표시					물자제출자		훈련 종류	해제일	해제 사유
		물자의 품명	물자의 소재지	규격 또는 구조	단위	수량	주소	성명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훈련대상물자 멸실·훼손 보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훈련대상물자가 멸실·훼손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멸실 또는 훼손된 물자

물자의 품 명	물자의 소재지	규격 또는 구조	단 위	수 량	멸 실 · 훼손		
					일 시	원 인	멸실 또는 훼손 장소

끝.

기 관 의 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훈련대상물자 멸실·훼손 통지

업 체 명							
물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업체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물자의 품 명	물자의 소재지	규격 또는 구조	단 위	수 량	멸 실 · 훼손		
					일 시	원 인	멸실 또는 훼손 장소

귀하의 훈련대상물자가 멸실·훼손되었음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

직인

보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훈련 대상자	업체명	
	물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업체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물자의 품명	물자의 소재지
	규격 또는 구조	단위
	수량	과세 또는 시가표준 금액
	보상신청 금액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제2항(영 제2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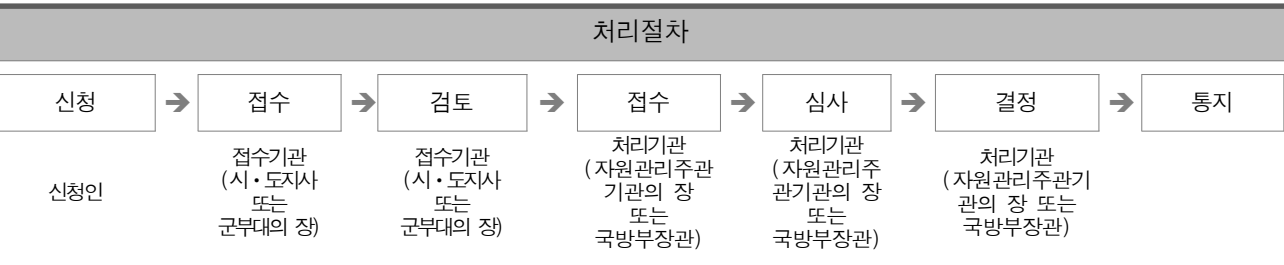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유: 시·도지사등 또는 군부대의 장 귀하

수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또는 국방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물자의 사용 또는 훈련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또는 경위서 1통 2. 보상신청금액의 산출 기초자료 1통	수수료 없음
------	---	-----------



보상금 지급 통지

업 체 명			
물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업체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접수번호	물자의 품 명	물자의 소재지	규격 또는 구조	단 위	수 량	보상금액

귀하가 제출한 훈련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하오니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기관에 재심을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관장명

직인

(뒤쪽)

보 상 금 산 출 명 세

보상금 재심청구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

청구인	업체명
	물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업체의 대표자 성명
	주소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4항(영 제2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금의 재심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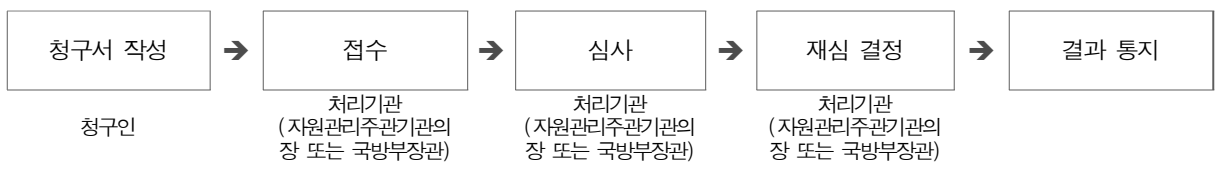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또는
국방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보상금 지급통지서 사본 1통 2. 재심청구 사유서 1통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안전부령 제 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제2조제1항제2호”를 “제2조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2조의4제3항,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하고,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제2조의2 제목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각각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u> 제2조(과학기술자의 채용 통보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자를 채용 또는 고용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학기술자 채용·고용·해임·해고 통보서를 해당 과학기술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u>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u> 제2조(과학기술자의 채용 통보 등) ----- ----- ----- ----- 제2조제1호나목 ----- ----- -----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4331